

2005. 6. 24.(금)

제112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

# 심 사 보 고 서

-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

자 치 행 정 위 원 회

#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6. 13. 제 천 시 장  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6. 14.  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6. 21.(제112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제2차회의)

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사업과장 지선대)

### 가. 제안사유

-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미래지향적인 감각에 맞게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제명을 제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 앞으로 청소년시설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후준)

-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·사회·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청소년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
  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청소년활동 시설의 종류는 청소년 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문화의집, 청소년특화시설, 청소년야영

장, 유스호스텔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

-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는 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동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위탁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시설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7조(사무의 위탁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단체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새로이 신설되는 청소년문화의집과 기존의 공부방등 청소년시설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면 수정하는 것으로 제2조(정의)의3 제6항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의집, 청소년야영장)의 정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제2항 하단 법 제3조 제6호 다음에 및 청소년활동법 제10조를 삽입하고 3-6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제3조(시상운영) 제4항 위탁 또는 임대시에는 제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한 조항은 상기 사항과 같이 청소년시설의 위탁은 청소년 기본법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22조(준용)에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제2조 3호에서 6호까지는 삭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.
- 제13조(지원) 청소년 수련시설등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등 지원 근거가 명확함으로 제천시 본조를 관리하는 제22조의 준용법령으

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.

※ 별첨 :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

- 제9조(이용료의 징수) 별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타 시설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타 시설에는 그에 맞는 이용료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명칭은 제천시 청소년 수련관 이용료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제22조(준용)의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다음에 청소년활동 진흥법,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지방재정법을 삽입하고 지방세법은 실질적으로 준용사례가 없을것으로 보아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부칙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당시 청소년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난해한 조항임.

#### 4. 질의답변 요지

##### 가. 질의요지

- 제2조 3항, 4항, 5항, 6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법10조를 넣으면 어떻겠는가? (민경완 위원)
- 제14조 2항이 22조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이상 없겠조? (민경완 위원)
- 지방세법은 준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지방세법은 실질적으로 준용한 사례가 없습니까? (민경완 위원)

##### 나. 답변요지 (복지사업과장 지선대)

-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.

- 3조와 같이 이상없습니다.
- 지방재정법이 더 큰 법이니까 그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.

## 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## 6. 토론요지

-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제2조 제2호를 수정하고 제2조 3호에서 6호, 제3조제4항, 제14조제2항은 삭제하며, 제22조에 청소년활동진흥법, 지방재정법,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,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함.

## 7. 심사결과

- 민경완의원 수정안 발의 (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)
- 수정안 표결결과
  -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수정가결

## 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- 조문대비표 1부. 끝.